

문서번호	기획예산과-3207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6.3.2.	김동찬	전혜정	조상연	이상형	하철승	03/02 박경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

2016.3.2.

강 북 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

경영성과계약을 통해 이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경영목표를 분명히 하여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및 인사조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I

관 련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 지방공기업 『CEO 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 (행정자치부 2006.7.)

II

운 영 방 법

- 운영원칙
 - 계약서상의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이 평가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외에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이 성과 인센티브 조치
- 운영절차
 1. 경영성과계약안 작성 및 경영성과계약 체결
 - 계약안에 대하여 구청장과 CEO가 합의
 - 계약조건 (연봉, 평가급, 연임·해임 등 포함)
 2. 사업추진: 경영목표 추진
 3. 실적보고
 - 평가계획 수립
 -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다음연도 4월, 이사장 ⇒ 구청장)
 4. 실적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다음연도 6월~8월)
 - 평가완료, 결과공시 (다음연도 9월)
 5. 결과조치
 -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급 지급, 연봉조정, 연임 또는 해임조치 기준으로 활용

Ⅲ

운영 계획

□ 경영성과계약 체결: 불임 경영성과계약서(안) 참조

○ 계약서 주요내용

-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연봉액, CEO의 경영목표
- 이행실적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내용

□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5개 항목, 16개 성과지표

구분	경영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배 점
공통 목표	① 차질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 (15점)	시설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	100	5
		재해 및 안전사고 건수 증감율	△5%미만	5
		지역사회 공헌	10건이상	5
	② 고객만족 증진 (15점)	고객만족도 점수	85	5
		민원 증감율	△3%미만	5
		민원답변 준수율	100	5
자율 목표	③ 책임경영 구현 (30점)	경영전략 수립,적정성 및 이행실태	비계량지표	10
		청렴윤리실천노력 - 청렴교육이수 - 청렴시책추진	90% (3) 비계량지표(2)	5
		지적사항 처리실태	100	5
		인사관리의 투명성	100	5
		직원만족도	80	5
	④ 사업목표 달성 (25점)	사업수입 목표 달성	105	10
		사업비 절감 비율	85	10
		시설물 이용자 증가율	5%이상	5
	⑤ 정부 및 강북구 정책 준수(15점)	공기업 정책준수	90	5
		강북구 정책준수	비계량지표	10
계				100

○ 공통목표: 필수적인 CEO 경영목표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2개 항목)

○ 목표별 가중치: 총100점(공통목표 30점, 자율목표 70점)

※ 목표치(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1. 평가 실시방법

- 평가시기: 2016년 6월~8월
 - 평가대상: 이사장이 제출한 전년도 이행실적
 - 평가단 구성: 총 6명(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위탁업무 부서 과장 4명)
- 평가방법: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2. 경영성과계약 이행여부 판단

- 이행여부 측정
 - 목표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달성도 측정
 - 목표치 달성시 해당목표 만점처리
- 평가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판단 및 등급부여

달성율	90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	우수	보통	미흡

3. 평가결과 공개

- 방법: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 내용: 경영목표 및 주요 실적, 평가점수, 인센티브 조치사항

□ 평가결과 성과보상(성과 인센티브)

- 경영평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보상
 - 평가급 차등지급: 0~400%
 - 연봉조정: -10~10%
 - 연임 및 해임조치 기준으로 활용

붙임: 경영성과계약서 1부. 끝.

-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經營成果契約書

2016. 3.

강 북 구

第 1 章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평가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구청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서명 날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②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3월 7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이사장은 퇴임 후 3년 동안 공단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④이사장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第 2 章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 제6조(경영목표)** ①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1과 같다.
- ②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7조(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 이사장은 매년 경영성과계약에 대한 해당연도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①이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구청장이 행한다.
- ②제1항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③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① 이사장의 경영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이행실적평가 결과 순으로 평가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

②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

第 3 章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보수체계)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부가급여, 평가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본연봉) ①이사장 임용 시 기본연봉액은 별표 5와 같고 기본 연봉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

②기본연봉은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조정률은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10%~10%(물가상승률 포함)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⑤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평가급) ①이사장의 평가급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평가대상연도의 연봉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평가급 지급시기는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연도의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 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이사장에게 평가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조정한다.

②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금) ①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리후생 등) ①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第 4 章 기 타

제16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강북구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8조(권리의 귀속)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19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2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계약기간) 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임명일로부터 임기 1년으로 정한 것이며, 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다.

제2조(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시기) 제8조에 의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본 계약서가 체결된 2016년도의 경영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부터 실시한다.

제3조(성과 인센티브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평가급 지급과 연봉조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임용된 2016년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따라 강북구청장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

2016년 3월 일

강 북 구 청 장 (인)

강 북 구 도 시 관 리 공 단

(인)

이 사 장 강 영 조

별 표 1. 경영목표

2. 경영목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3.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4. 연임 및 해임
5. 기본연봉
6. 평가급 지급율

[별표1] 경영목표

구분	경영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배 점
공통 목표	① 차질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 (15점)	시설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	100	5
		재해 및 안전사고 건수 증감율	△5%미만	5
		지역사회 공헌	10건이상	5
	② 고객만족 증진 (15점)	고객만족도 점수	85	5
		민원 증감율	△3%미만	5
		민원답변 준수율	100	5
자율 목표	③ 책임경영 구현 (30점)	경영전략 수립,적정성 및 이행실태	비계량지표	10
		청렴윤리실천노력 - 청렴교육이수 - 청렴시책추진	90%(3) 비계량지표(2)	5
		지적사항 처리실태	100	5
		인사관리의 투명성	100	5
		직원만족도	80	5
	④ 사업목표 달성 (25점)	사업수입 목표 달성	105	10
		사업비 절감 비율	85	10
		시설물 이용자 증가율	5%이상	5
	⑤ 정부 및 강북구 정책 준수(15점)	공기업 정책준수	90	5
		강북구 정책준수	비계량지표	10
	계			

[별표2] 경영목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차질 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15점)

① 시설점검계획 수립·집행(5점)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준수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및 계획 미수립 0점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증감율 (5점)

- 보험사고 처리건수 전년도 대비 증감율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증감율(%)	△5% 미만	△3% 미만	△1% 미만	1% 미만	3% 미만	3% 이상 0점

※ 중대재해는 발생건수와 관계없이 0점 처리

(중대재해 기준 : 사망 1인 이상, 3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2명, 부상자 10명 이상, 대물배상 1억원 이상)

단, 안전사고 건수가 $6 \leq \text{사고건수} \leq 10$ 이면 +1 득점

안전사고 건수가 $\text{사고건수} \leq 5$ 이면 +2 득점(단, 평가점수가 5점 이상일 경우 5점 처리)

③ 지역사회 공헌활동 (5점)

- 지역사회 발전기여 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 봉사활동 등 각종 공헌 활동실적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0점

2. 고객만족 증진(15점)

① 고객만족도 점수(5점)

- 전문기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결과 만족도 점수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평가점수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5점미만 0점

② 민원증감율(5점)

- 공단 전자민원에 제기된 민원의 전년도 대비 증감율(%)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증감율(%)	△3% 미만	△1% 미만	0% 미만	2% 미만	5% 미만	5% 이상 0점

③ 민원 답변 준수율(5점)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준수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0점

산식 = 민원답변건수 / 민원발생건수 × 100

※ 민원답변 : 민원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홈페이지 전자민원)

3. 책임경영 구현(30점)

① 경영전략 수립, 적정성 및 이행실태(10점)

- 평가항목 :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경영 목표 및 그 실현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으며,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이를 수정·보완하는지 여부와 이행 실태 평가
- 측정방법 : 비계량지표 평점부여 기준에 의하여 산정

② 청렴윤리실천노력(5점)

- 청렴교육이수실적: 3점

점 수	3점	2점	1점	비 고
이수율(%)	90% 이상 이수	80% 이상 이수	70% 이상 이수	70% 미만 0점

※ 전 직원 15시간 의무이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북구 사이버 창의혁신 교육과 연계한 청렴교육 (전 직원 회원가입으로 수강·이수 가능)

※ 단 현장업무직 근무 직원은 제외

- 청렴시책추진실적: 2점
 - 평가항목: 팀별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실적
 - 측정방법: 비계량지표 평점부여 기준에 의하여 산정

③ 감사 · 평가 등 지적사항 처리실태(5점)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이행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0점

※ 단, 지적사항 처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④ 인사관리의 투명성(5점)

- 공개채용원칙 준수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준수율(%)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0점 정규직 대상

※ 단, 정부지침 및 관계 법률에 근거한 특별채용은 제외

⑤ 직원만족도(5점)

- 공단에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당연도 직원 만족도 점수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평가점수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0점

4. 사업목표 달성(25점)

① 사업수입목표 달성(10점)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비 고
달성률(%)	105% 이상	104% 이상	103% 이상	102%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5점

※ 전년대비 사업수입 증가율 기준

※ 사업수입은 강북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단, 비수익 사업(구청, 미아동복합청사 및 보건소 청사관리)은 제외, 기타수입은 포함한다.

② 대행사업비 절감율(10점)

- 평가년도 대행사업비 절감율(%)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비 고
달성율(%)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미만 5점

※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대행사업비 절감율” 지표점수를 100점 만점기준 비율 환산 평점함

③ 시설물 이용자 증가율(5점)

- 전년도 대비 이용자 증가율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증감율(%)	5% 이상	3% 이상	0% 이상	△3% 이상	△5% 이상	△5% 미만 0점

※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1인당 시설관리실적” 지표점수를 100점 만점기준 비율 환산 평점함

5. 정부 및 강북구 정책준수(15점)

① 공기업 정책준수(5점)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달성율(%)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0% 미만 0점

※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공기업 정책준수” 지표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 비율 환산 평점함

$$\text{산식} = \text{정책준수 실적} / \text{정책준수 목표} \times 100$$

② 강북구 정책준수(10점)

- 평가항목: 구 정책의 준수, 업무협조,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대한 추진결과 반영
- 측정방법: 비계량지표 평점부여 기준에 의하여 산정

□ <비계량 지표 평가방법>

- 각 지표별 평가내용이 아래의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여부 평가
- 평점부여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 가 기 준
매우우수	90점 이상 ~ 100점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매우우수 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매우우수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선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다소미흡	60점 이상 ~ 7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과거수준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	60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별표 3]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점 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별표 4] 연임 및 해임

□ 연임보장 사유

1. 경영평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모두 2년 연속 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3년 이상 최하위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있는 공단을 2등급 이상 상향시킨 경우
3. 경영평가 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써,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에서 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 임기 중 해임사유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경영평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모두 미흡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3. 경영평가 결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공단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5] 기본연봉

□ 기본연봉 : 61,014,120원(월 기본급 2,915,400원)

※ 연봉액

기본연봉	61,014,120원 (연봉월액 : 5,084,510원) *일원단위 절사
성과연봉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구칭장이 결정
부가급여	공단 보수규정 등 준용

[별표 6] 평가급 지급률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등급	지급률	비고
가	301~400%	
나	201~300%	
다	100~20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단, '평가급 지급률'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의 평가급 지급률 범위 내에서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연 봉 계 약 서

1. 연봉계약자

- 소속 및 직급(직위):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성 명: 강 영 조

2. 계 약 기 간 : 2016. 3. 7. 부터 ~ 2017. 3. 6. 까지

3. 연 봉 금 액

기본연봉	61,014,120원 (연봉월액 : 5,084,510원) *일원단위 절사
성과연봉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
부가급여	공단 보수규정 등 준용

- (1) 기본연봉과 평가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합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월 단위로 지급하고,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연도의 12월에 지급한다.
- (3)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붙임1>의 연봉 구성표의 기본급으로 한다.
- (4)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준수사항

-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16. 3. .

계약대상자 :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 영 조 (인)

계약대상자 : 강 북 구 청 장 박 검 수 (인)

<붙임 1>

이사장 연봉 구성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비고
총 계	68,094,120	월 지급액 : 5,674,510원	
기본 연봉	합 계	61,014,120	
	기 본 급	34,984,800	월 기본급×12월 (월 기본급 2,915,400원)
	상여수당	5,830,800	월 기본급×200%
	가계안정비	7,288,500	월 기본급×250%
	급식보조비	1,560,000	130,000원×12월
	직급보조비	6,000,000	500,000원×12월
	명절휴가비	3,790,020	월 기본급×65%×2회
	교 통 비	1,560,000	130,000원×12월
	기준가산급		
성과 연봉	평 가 급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연봉월액 × 지급률
부가 급여	합 계	7,080,000	
	직책급업무추진비	6,600,000	550,000원×12월
	가 족 수 당	480,000	40,000원×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 해당시 지급